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

판 결

사건 2023고정165 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, 점유이탈물횡령

피고인 A

검사 김다혜(기소), 박자영(공판)

판결선고 2023. 10. 10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500,000원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, 피해자 C(52M)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며, 피해자 D(여, 19M)와 피해자 E(여, 19M)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간 사람이다.

1. 점유이탈물횡령

피고인은 2023. 4. 26. 12:00경 진주시 F, B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피해자 D(여, 19세)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(계좌번호 1 생략) 1개를 습득하였다.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.

2.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
피고인은 전 항에서 횡령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(계좌번호 1 생략)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B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피해자 G(57세)이 관리자로 있는 H편의점에서 2023. 4. 26. 12:17경 4,700원, 같은 날 12:20경 10,850원, 같은 날 12:22경 3,600원을 사용하였다.

3.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
피고인은 2023. 4. 27. 18:55경 진주시 I, 피해자 C(52세)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 아래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참고인 E(여, 19세)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(계좌번호 2 생략)를 사용할 목적으로 꺼내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,800원 상당의 K 공용유심칩 1개를 결제하고 다시 분실 카드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E, C, G의 각 진술서
- 1. 입건전조사보고서(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등), 각 수사보고서(피해현장 CCTV영상)
- 1. 112신고사건처리표
- 1. 각 영수증
- 1. 증거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60조 제1항(점유이탈물횡령의 점), 각 형법 제347조 제1항(사기의 점),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(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), 각 벌금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,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

한 점 등 참작)

1. 노역장유치(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)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1일 10만 원)

판사 이아영